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59 발의연월일: 2020. 12. 23.

발 의 자 : 임종성 · 맹성규 · 송갑석

기동민 · 서영석 · 송재호

김영호 · 김영진 · 홍익표

소병훈 · 정춘숙 · 김정호

윤후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 중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,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 단체 협의대상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모 두 일률적으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 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대상 범위를 각각 2km 이내, 300미터 이내로 규 정하고,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의무를 배제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의무적용 범위를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,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는 300미터 이내로 구분하고, 해당 범위에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을 경우 협의 의무를 배제함(안 제9조제7항).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7항 전단 중 "2킬로미터 이내인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, "해당 지방자치단체"를 "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"로하고,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 전단 중 "제8항"을 "제9항"으로, "2킬로미터 이내인"을 "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제7항 후단"을 "제8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8항"을 "제9항"으로 한다.

다만,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「주택법」 제2조에 따른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.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: 2킬로미터 이내
- 2.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: 300미터 이내
-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

이루어지지 아니하면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7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공고
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9조(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 제9조(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 정) ① ~ ⑥ (생 략) 정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(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 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 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 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 -----해당 인접 지방 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폐기물처 -----. <후단 삭제> 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 다만,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 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어지지 아니하면 「환경분쟁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정법」 제4조에 따른 중앙환 관할 구역에 「주택법」 제2조

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 청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⑧ (생략)

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 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 지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이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.

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
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<u>다.</u>
1.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: 2킬
로미터 이내
2.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
경우: 300미터 이내
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
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
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
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4조에
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
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 ⑩ 제9항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 ⑩ 제9항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 ⑩ 제9항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 ⑩ 제9항
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 ⑩ 제9항

10	제3형	당 및	제8호	<u>항</u> 후	단에	따
른	입기	기선정	위원:	회의	운영	에
필요	오한	사항	슨	대통령	령으	로
정형	한다.					

$\underline{\underline{11}}$	<u>제9항</u>